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34호

「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법률 제19425호, '23.6.1. 공포·시행)의 위임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조기 회수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< 주요 내용 >

- 가.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자와 합의하여 협의매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- 나. 매입가격은 경·공매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함(안 제3조제2항)

- 다.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항(제4조)를 준용하여 공급하도록 함(안 제3조제5항)
- 라.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조사방식 등 매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
- 마.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결정문 정보 송달 이전 경·공매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(안 제5조제1항)

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451호)
- 팩스 : 044-201-5572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479, 4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